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가합5971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엘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2. 6. 17.

판결 선고2022. 8. 12.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1,3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105,633,433원 및 그중 1,060,000,000원에 대하여

나. 3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3,264,894원 및 그중 12,807,000원에 대하여

각 2021. 12. 24.부터 2022. 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2021. 4. 22. 경북 예천군 D 답 3,540㎡ 및 E답 922㎡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경북 예천군 D 답 3,540㎡ 및 E답 92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21. 4. 23. 접수 제63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중 보증한도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원고의 주식회사 F에 대한 2019. 3.

29.자 대출에 관하여 1,320,000,000원을 한도로, 2019. 4. 30.자 대출에 관하여 36,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대출의 대출원리금 잔액이 아직 근보증 한도액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각 근보증 한도액인 1,320,000,000원 및 3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3. 29.

주식회사 F과의 사이에 일반자금대출계약을, 위 회사 대표이사 B과의 사이에 1,320,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9. 4. 30. 위 회사와의 사이에 장외 파생상품

거래계약을, 피고 B과의 사이에 36,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위 각 계약에

따른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별지 청구원인 가.항 기재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3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105,633,433원 및 그중

1,060,000,000원에 대한, 3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3,264,894원 및 그중 12,807,000원에

대한 각 2021.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와 피고 사이의 경북 예천군 D 답 3,540m² 및 E답 922m²(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체결 당시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피고 B에게 위 계약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21. 4. 23. 접수 제6387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송승우

판사김진호

판사이지현

별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